

보다 안전한 미래

(사)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

(우)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(수서동, 로즈데일오피스텔 1828호) / Tel 02-567-1307/ Fax 02-567-1337

www.assi.or.kr

E-Mail : assi1337@naver.com

담당 : 박용복 국장

문서번호 시험 2020 - 331호

시행일자 2020. 10. 16.

수신 협회 회원사 대표

참조

선결			지시	
접	일자		결	
수	시간		재	
	번호		공	
처리과			람	
담당자				

제목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

1. 건설공사와 국가 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회원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.
2. 국토교통부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가 있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(1)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공문 1부. 끝.

(사)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





국토교통부

국 토 교 통 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

1. 교통정책총괄과-1138(2020.10.13.) 및 중앙방역대책본부-1113(2020.10. 13.)호와 관련입니다.
2.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아래와 같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.
3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이하, 감염병예방법)」 개정(2020.8.12.)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,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20.10.13.부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.
4. 질병관리청(중앙방역대책본부)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'20.10.4.)보고

- 적용기간: 감염병 위기 "경계"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
※단, 계도기간 1개월(~2020.11.12.)부여
- 법적근거: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~4호, 제83조
- 과태료 부과 대상 등 : 상세내용 <붙임> 참조

붙임 1. 관련공문 각 1부.

2.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1부. 끝.

국토교통부 장관



수신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,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장

주무관 **문성준** 시설사무관 **심보경** 시설안전과장 **김태곤** 전결 2020. 10. 15.

협조자

시행 시설안전과-7654 (2020. 10. 15.) 접수

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어진동) 국토교통부 / <http://www.molit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4579 팩스번호 044-201-5553 / msj20@molit.go.kr / 대국민 공개

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.